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82

발의연월일: 2021. 3. 5.

발 의 자:정청래·유정주·전혜숙

홍성국 • 양이원영 • 송갑석

이수진 • 권인숙 • 오영환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치료를 마친 강아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사건, 코로나19로 인해 동물원이 휴장하자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물·사료조차 주지 않고 방치한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에 국민의 큰 공분을 사고 있음.

200만 반려동물 가구 시대에 들어선 지금,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물도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됨에도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아 학대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이에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혀 동물을 악의 또는 의도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적절한 음 식, 음료, 쉼터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 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제3호의2).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 중 "사육공간 제공 등"을 "사육공간, 적절한 음식, 음료, 쉼터의 제공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한다.

4. 악의를 갖고 혹은 의도적으로 동물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고문하거나, 상처 내거나, 죽이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악의를 갖고 혹은 의도적으
	로 동물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고
	문하거나, 상처 내거나, 죽이
	<u>는 행위</u>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3의2
<u>사육공간 제공 등</u> 농림축산식	사육공간, 적절한 음식, 음료,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	쉼터의 제공 또는 날씨로부
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u> 터의 보호 등</u>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